

## 2. 주요내용

- 신고의 처리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 물류분쟁으로 인한 신고내용 및 방법 등 신고의 절차를 정하고, 신고에 따른 사실확인, 처리기한 등 신고처리의 기준을 정함.
- 물류신고에 대한 조정 권고의 절차(안 제4조의4 신설)
  - 신고자 등에게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의 내용, 절차 등 조정 권고의 절차를 정함.
- 자료 제출 및 보고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5 신설)
  - 물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 조사의 연기 등 기준 마련(안 제4조의6, 제4조의7 신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조사의 연기 등의 기준을 정함.

## 3. 의견제출

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6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우편번호 30103 (전화 044-201-3996, 팩스 : 044-201-5601)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전화 : 044-201-39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6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태일케미칼(김영규) ② 부림산업개발(주)(김상운)  
③ 지엘기술(주)(윤인구)
- 나. 전화번호 : ① 02-2612-0121 ② 031-707-8331 ③ 062-525-7177

2. 명칭 : 아라미드섬유 혼입 폴리머모르타르와 은나노를 적용한 항균 및 기능성 표면보호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공법(ANYTECH ®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토목 콘크리트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의 표면처리 하도재는 수성에폭시로 구성되어 열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알칼리성을 부여하고 침투 기능은 구조물 표면을 강화시켜 주며, 보수 모르타르와 강한 부착력을 갖으며 방청 기능도 발휘한다. 아라미드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는 높은 인장력 및 내열·내한성으로 수축팽창 현상이 없고, 후기 재령에서도 초기 모르타르와 변형없이 향상된 내구성을 발휘한다. 은나노가 적용된 표면보호 상도재의 항균력은 외부의 유해물질로 부터 구조물의 열화를 방지하고, 매연, 황사, 미세먼지에 대한 내오염성 기능은 구조물 표면의 청결함을 유지하며, 표면보호재의 도막은 내화성과 물리적 성능 및 악취가스탈취와 화재 안정성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상도색상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구조물 외관의 미려함을 얻을 수 있다

<범위>

알칼리성의 수성 에폭시폴리머로 구성된 표면처리 하도재(EPR-35) 도포 후, 아라미드섬유 혼입 폴리머모르타르(HCM-250)로 단면 복구한 다음, 은나노를 적용한 항균 및 기능성 표면보호 상도재(HECA®#200)로 시공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66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조정대상지역 지정

1. 대상지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2. 지정기간 : 2018. 12. 31. ~ 지정 해제시까지